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22. 김승원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6. 7. 23.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23.)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4.)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6. 7. 29.)

상정·대체토론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7. 29.)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승원의원)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양형심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있음. 나아가 수사행위의 수행자와 지휘·승인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외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7조의2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23.)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